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 : 하이 글로벌 멀티에셋30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변경 시행일 : 2018년 11월 9일

3. 변경사유

- ①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: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→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- ②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취득한도 변경(주식 단서조항)
- ③ 종류 A-E, A-G, C-G, C-Pe, C-P2, C-Pe2, S-P2 수익증권 신설
- ④ 환매수수료 삭제
- ⑤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

4. 변경사항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내지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___ 같다. 1. 내지 9. (생략) < 추 가 > < 추 가 > < 추 가 > < 추 가 >	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___ 같다. 1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 10. 종류 A-E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 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11. 종류 A-G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12. 종류 C-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 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 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13. 종류 C-P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 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___ 같다. 1. (생략) 2.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14. 종류 C-P2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15. 종류 C-Pe2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16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___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발행하여야 한다. 1. 내지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>② 내지 ⑤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발행하여야 한다. 1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종류 A-E 수익증권 11. 종류 A-G 수익증권 12. 종류 C-G 수익증권 13. 종류 C-Pe 수익증권 14. 종류 C-P2 수익증권 15. 종류 C-Pe2 수익증권 16. 종류 S-P2 수익증권</p> <p>②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9조 (보수)</p>	<p>① 내지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___ 한다. 1. 내지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	<p>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___ 한다. 1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종류 A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</p>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: 연 1000분의 0.28</p> <p>15. 종류 C-Pe2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3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8</p> <p>16. 종류 S-P2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7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8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0조 (판매수수료)</p>	<p>① (생략)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___ 한다. 1. 내지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 가 ></p> <p>③ 판매회사는 ___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내지 ⑤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___ 한다.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종류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25% 이내</p> <p>4. 종류 A-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</p> <p>③ 판매회사는 ___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(종류 C-P2 수익증권, 종류 C-Pe2 수익증권 및 종류 S-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”)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1조 (환매수수료)</p>	<p>①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C-P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,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</p>	<p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

	<p>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
<p>제43조 (신탁계약의 변경)</p>	<p>① 내지 ③ (생략)</p> <p>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 (이하 생략)</p>	<p>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제45조 (투자신탁의 해지)</p>	<p>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 제 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</p>	<p>① 내지 ⑥ (생략)</p> <p>⑦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	<p>① 내지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 제 >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이 신탁계약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1조(환매수수료)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

나. 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갱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운용인력(운용현황) - 재무정보(반기) -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집합투자업자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-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현황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<p>2018-11-09 신탁계약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: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 혼합-재간접형] →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- 종류 A-E, A-G, C-G, C-Pe, C-P2, C-Pe2, S-P2 수익증권 신설 - 환매수수료 삭제 <p>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취득한도 변경(주식 단서조항)</p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모자형 구조	<p>[모투자신탁 명칭 및 투자대상 취득한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투자신탁 명칭 :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- 모투자신탁 투자한도(주식 단서)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 	<p>[모투자신탁 명칭 및 투자대상 취득한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투자신탁 명칭 하이 글로벌 에셋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- 모투자신탁 투자한도(주식 단서)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	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<p><환매수수료 삭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종류 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 - 전환시 환매수수료 : 해당사항 없음 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		

<p>준가격 적용기준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<신 설></p> <p>(1) 종류 A-E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29)</p> <p>① 가입자격 :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25% 이내</p> <p>③ 투자신탁 보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5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2) 종류 A-G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0)</p> <p>① 가입자격 :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</p> <p>③ 투자신탁 보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49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3) 종류 C-G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1)</p> <p>① 가입자격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p> <p>③ 투자신탁 보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68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4) 종류 C-Pe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2)</p> <p>① 가입자격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p> <p>③ 투자신탁 보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7%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5) 종류 C-P2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②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③ 투자신탁 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66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6) 종류 C-Pe2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②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③ 투자신탁 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3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<p>(7) 종류 S-P2 수익증권(협회코드 CH03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②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③ 투자신탁 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5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7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6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8% 	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끝.